

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0조, 제35조,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창출장려금(신중년 적합직무고용지원금)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및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2. 07. 06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



1. 건 명: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20조, 제35조,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장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지원금액	회수금액	회수사유		
주식회사 디에이치랩 (이○한)	296-86-010**-0	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	2,400,000원	2,400,000원	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	폐문부재 (2회)	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2.07.06. ~ 2022.07.20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관악고용센터 신성주(Tel. 02-3282-937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